##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952 발의연월일: 2023. 3. 28.

발 의 자:서일준·김영선·조명희

조은희・김영식・박 진

金炳旭・김학용・안철수

이 용・한무경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내 경범죄의 단속 · 예방을 위해 도시철 도운영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지하철보안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.

그런데 지하철보안관은 사법경찰권이 주어져 있지 않아, 이들이 지하철에서 범죄 행위를 적발한다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수준의 단속만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.

이에 도시철도운영자인 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경범죄의 단속과 관련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, 지하철에서의 질서위반행위를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(안 제7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4(도시철도운영자의 임직원)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 중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법인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그 법인의 대표자의 추천에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은 그 관할 구역의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조 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선로,역사 및 역 시설에서 발생하는 「경범죄 처벌법」 제3조제1항제18호부터 제21호까지,제23호,제36호 및 같은조 제2항제3호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에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,그 외의 직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수행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<u>&lt;신 설&gt;</u> | 제7조의4(도시철도운영자의 임직      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| 원)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8       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| 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 중        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|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      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| 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법인        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| 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그 법인       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| 의 대표자의 추천에 의하여 그       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|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       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| 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은       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| 그 관할 구역의 같은 법 제2조      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|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       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| 은 조 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       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| 철도의 선로, 역사 및 역 시설      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| 에서 발생하는 「경범죄 처벌        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| 법」 제3조제1항제18호부터 제      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| <u>21호까지, 제23호, 제36호 및</u>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|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규정된       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|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에 대하        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| 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, 그 외      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| 의 직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        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| 를 수행한다.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